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05]
(제정) 2026.03.05 조례 제313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30-40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乳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결혼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예비 부부를 포함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것 외의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
 2.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3.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4.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 난임 관련 지원
 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 산후조리 관련 지원
 9. 출산축하물품 지원
 10.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11.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기준 또는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복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캠페인 또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중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30호, 2026.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2.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또는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